

제10장 통신

제10.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기업에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8장(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가(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약속 외의 추가적인 약속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1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10.3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 · 신호 ·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 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당사자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 그리고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제2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호접속에 관한 의무

제10.4조 상호접속

-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의 요율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업적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그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

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다음 선택권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나.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다.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상호접속 협정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제3항가호에 따라 상호접속이 제공되는 경우 요율 및 조건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제10.5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그 해저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¹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3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10.6조 경쟁보장장치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며, 2)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차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 라.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0.7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어떠한 공급자에 대하여도 지분을 소유²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³에 대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10.8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모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라는 용어는 그 통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제10.9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의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의 사유를 신청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10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특히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와 관련되어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장(서비스 무역)과 제12장(투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려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비면허 사용 또는 입찰초청 등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익을 고려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한다.

제10.11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그러한 권한은 금전적 벌칙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10.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18.3조(행정절차) 및 제18.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 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 내 통신규제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적 재심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13조 특명성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되도록 할 것
-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4) 면허요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조치가 있으면, 그러한 조치
 - 5)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표준에 관한 조치의 개정 및 채택, 그리고
 - 6)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0.4조에 명시된 종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제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⁴

1.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⁵

제10.15조 업계와의 협의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을 제외하고, 이 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권리를 보유하며, 2)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각 당사국은 통신 정책, 규정 및 표준의 개발에 있어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의를 촉진한다.

제10.16조 국제로밍요금

양 당사국은 국제모바일로밍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각국의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양 당사국 간 국제모바일로밍의 도매요율을 인하하도록 장려한다.

제10.17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5절 정의

제10.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 또는 이용자들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하여 전송된 것으로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란 공중 통신 망,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모든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제8조 및 「전신업분류목록」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